

Deloitte.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이해와 준수



목차

소개	3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인가?	4
누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비해야 할까요?	5
US-SOX 와 내부회계관리제도	6
US-SOX로 부터의 교훈	7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8
현재 자원을 기반으로 구축	8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기술 활용	9
과거 경험 활용	9
베트남 내 한국 자회사에 대한 영향	10
결론	11

소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회계부정 사건 및 기업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규제 당국은 기업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관한 몇 가지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외부감사 (Act on External Audit)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 및 비상장 법인 모두에게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 ICFR ") 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장법인과 연결 기준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이 주제에 관한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71.5	+0.5	431,522,000	20,309	1.75%
0.13	+8.33	5,221,600	0	0
3.9	+2.63	0	420	3.40%
0	0.00	14,400	100	2.35%
29	0.00	24,300	2,703	9.00%
4.44	-0.45	5,600	2,442	50%
484	+0.93	1,220,900	413	3.07%
2.02	+1.00	6,400	29,001	2.07%
64.5	-0.77	4,319,600	8,094	6.40%
6.95	+1.46	577,100	2,009	1.1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입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7년 제도 개선 정책의 일부로 도입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몇 년 전 일련의 주요 회계 및 기업 스캔들 발생 후 2002년에 발효된 미국의 Sarbanes-Oxley 법 (US-SOX)을 매우 유사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엄격한 내부 통제 요건을 통해서 기업들이 공시 한 허위 정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발표된 기본 표준을 바탕으로 재무보고 (ICFR)에 대한 내부 통제에 중점을 두고 주로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외부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CEO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평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2023년부터는 ICFR에 대한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비해야 할까요?

본 규정의 대상 및 적용 일정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별도 재무제표 수준에서는 2019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연결 재무제표 수준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에서 감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의 경우 2023 회계연도부터;
-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 법인의 경우 2024 회계연도부터;
- 이외 모든 상장 법인의 경우 2025 회계연도 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장법인 및 그 자회사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경우 significant component를 식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연간 매출액의 5%, 또는
- 세전 소득의 5%, 또는
- 총 자산의 5%, 또는
- 자본의 5 % (해당되는 경우)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 시점뿐 아니라 significant component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KRX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US-SOX와 내부회계관리제도

US-SOX는 시행 직후인 2002년부터 보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효과성을 입증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여러 한국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본래 구조와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재무 보고 과정에 관여하는 인력들의 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US-SOX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ICFR은 회계감사위원회의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US-SOX의 일부 근간이 되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행을 위한 현지 지침 및 해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실제로 두가지 제도 모두 재무보고 문제에 중점을 둔 COSO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두가지 제도는 MRC(Management Review and Control), IPE (Information Provided by Entity), EUC (end-User Computing application)등을 포함한 위험 및 통제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위험 평가, 설계, 제어 테스트 및 모니터링과 수정 및 보고 등의 전반적인 준수절차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고 사항과 평가 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01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통합 (연결) 수준 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2

내 부 회 계 관 리 제 도 는 2022년부터 모든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수준에서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2023년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 수준에서의 감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03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유관기관은 감사 방식과 경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US-SOX로 부터의 교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회사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잘 준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 과정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사건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환은 감사 과정에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감사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환의 비용과 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US-SOX 도입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US-SOX를 시행한 지 4년 후인 2006년에 FEI(Financial Executives International)라는 기관이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섹션404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강조되어 있음) 수행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비용은 의사결정이 본사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경우 약 \$1.7 million, 의사결정이 각 회사별로 이뤄지는 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약 \$4.0 million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¹.

2007년에 유사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각각 \$1.3 million 및 \$1.9 million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². 이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시간 경과에 따라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되면서 비용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따르면 특히 US-SOX³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공표된 이후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규정 준수 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시행 이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따를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특히 내부 통제에 관한 섹션 404 부분에 있어서 US-SOX 규정을 밀접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세스의 적용 과정이 유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US-SOX는 법률로 발효되었을때 기존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비용과 규정 준수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수많은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US-SOX에 비해 낮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FEI 2007 Survey of SOX 404 Costs](#)". Fei.mediaroom.com. April 30, 2008.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July 14, 2011. Retrieved June 29, 2022

2 "[FEI Press Room - News Releases](#)". October 11, 200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October 11, 2007. Retrieved June 29, 2022

3 "[Study and Recommendations on Section 404\(b\)](#)" (PDF).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pril 2011.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공시된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US-SOX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향후 몇 년 동안 한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프로세스 검토는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중요한 일을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공식적 시행 될 때까지 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대한 현행 관리 정책의 부족함, 불필요한 복잡성 또는 사업부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지 평가하고 확인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저비용/고효율의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을 기반으로 구축

IFRS를 도입하고 K-GAAP에서 효과적으로 전환한 선구자 중 하나인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강력한 내부 정책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해 보고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반과 자원을 바탕으로 구축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여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원만을 활용하는 것으로는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완벽히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위 임원이나 이사회 뿐만 아니라 회사 내 모든 관련 인력들이 내부 구조 조정 및 개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 경영진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더라도 효과적인 내부 관리 제도를 구축할 책임은 이러한 전략적인 결정이 일상적인 운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기업의 모든 영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은 현재의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정책을 재평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기술 활용

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함에 있어 비용 및 수작업을 줄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기술 활용을 통한 자동화된 통제는 전환의 시작 시점부터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US-SOX 규정 준수를 위한 기존 ERP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통제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규정 준수, 자동화된 마감 및 통제 확인을 포함한 기술 활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준수를 지원 할뿐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과거 경험 활용

앞서 언급했듯 내부회계관리제도는 US-SOX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US-SOX는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초기 도입시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비용을 포함해서 높은 비용이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 회사와 규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가이드 라인 및 지침들은 특히 전환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Deloitte 의 Accounting research tool은 US-SOX 섹션 404에 관한 수많은 지침과 적용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재 역력과 관계없이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기업 경영진은 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베트남내 한국 자회사에 대한 영향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회사와 그 종속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ICFR을 강조하므로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그룹사의 자회사들도 해당 법령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회사, 특히 중요 자회사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룹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완전한 준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합한 ICF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4가지 주요 단계(**설계, 운영, 감독, 보고**)가 있으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사의 이사회 및 모든 임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1** 우선 **설계 단계**에서 이사회와 임직원 모두 각자의 책임과 업무 범위,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모회사의 지침 및 정책을 참조하여 현재 자회사의 통제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2** 구체적인 통제 활동을 설계한 후에는 **통제 활동을 시작**하고 해당 통제 활동이 규정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운영 단계에 이어서 **감독 단계**에서는 이사회, CEO, 감사 위원회 및 모회사의 ICFR 팀에서 통제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자회사는 감독 단계에서 확인된 통제 결함에 대해 모회사에 **보고**하고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결론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에도 이 새로운 법령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규정에 관심을 가질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요구 사항에 관한 구성원 교육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를 위한 연결 및 개별 기업수준의 재무보고와 관련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제도 도입과 구축에 있어서 Deloitte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팀과 여러 분야에 걸친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Meet our experts



Bui Van Trinh

Partner

Audit & Assurance
+84 28 710 14025
trabui@deloitte.com



Bui Tuan Minh

Korean Service Group Leader

+84 24 710 50022
mbui@deloitte.com



Doan Yen Chau

Senior Manager

Audit & Assurance
+84 28 710 14101
chaudoan@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Ninh Quoc Hoang

Manager

Audit & Assurance

+84 28 710 14176
hoangninh@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 Floor, Vinaconex Tower,
34 Lang Ha Street, Lang Ha
Ward,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Website: www.deloitte.com/vn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